#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57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 : 임광현 · 정일영 · 황정아

정태호 · 김정호 · 강득구

최기상 • 이기헌 • 조승래

강준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 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 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 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 2).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1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의 배우자는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 ① 제1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근로소 득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을 거주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에 합산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부합산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경우 부부합산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500만원(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되, 부부합산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후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부부합산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11항-----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제1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의 배우자 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 및 제10항에도 불구 <신 설> 하고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제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 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 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을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의 연간합계액에 합산하여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이하 이 항에서 "부부합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

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다. 이 경우 부부합산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50 0만원(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되, 부부합산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후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부부합산신용카드등소 등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의 합계액(연간 400만원을 한 도로 하되, 거주자의 해당 과 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